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2년 4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백주년기념관 2층 소회의실
위 원: 이병희(위원장), 류수현(부위원장), 김예동(위원), 남수진(위원), 박재영(위원), 임종성(위원), 이주승(위원), 형성민(위원)
첫 기 도: 박재영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1. 개회

위원장은 교직원 당연직위원, 학생대표 위원 및 외부전문가 위원의 동의를 받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요건을 충족하여 성원이 됨으로 개회를 선언함.

2.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위 원 장 : 지난 1월 5일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이어 제2차 위원회에 참석해준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학교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함. 또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팀 안교진 직원을 간사로 선임함.

위 원 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하여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수, 위원과 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를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야 함을 설명함.

예 산 팀 장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으로 현재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과 개정안을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함.

위 원 1 :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제안된 규정안이 잘 정비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히 학생측에 좀 더 유리하도록 개정된 모습으로 본 개정안을 동의함.

위 원 2 : 재청함.

모든 위원들 : 전체위원 거수함.

위 원 장 : 특별한 이의 없이 모든 위원이 찬성하였음을 설명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함.

3.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위 원 장 : 오늘 심의 내용이 2021학년도 결산서 심의 및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위해 실무책임자인 재무팀장을 초청하여 참석토록 제안함.

위 원 3 : 재청함.

모든 위원들 : 전체위원 거수함.

위 원 장 :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에 대해 재무팀장이 보고 하도록 요청함.

재 무 팀 장 : 결산서 작성 및 확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함. 결산서는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집행된 결과임을 설명함.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총 자금규모는 등록금회계 46,398,456,254원, 비등록금회계 35,654,220,868원으로 내부거래 1,208,796,850원을 제외하고 80,843,880,272원이 총 자금규모임을 설명함.
- 2)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교육시설을 위한 건축기금적립으로 200,000,000원 적립함.
- 3) 미사용차기이월금은 등록금회계 351,279,334원과 비등록금회계 2,234,036,742원으로 학교기업 920,934,137원, 국고 832,534,904원 포함된 금액임을 설명함.
- 4) 결산관련 주요내용으로
 - a. 등록금 수입
대학, 대학원 모두 전년 대비 동결, 전년대비 등록금수입 전체 227,781,044원 감소.
학부입학금 250,740,000원 감소(입학금 1인 140,000원 감소, 입학생 1,521명)
대학원입학금 15,865,000원 증가(입학생 19명 증가)
학부수업료 783,918,120원 감소(정규학기등록 629명 감소)
대학원수업료 688,853,830원 증가(학생수 112명 증가)
단기수강료 102,158,251원 증가(한국어과정 및 평생교육원 감소, 체육문화센터 증가 정상화를 증가)
 - b. 국고사업 수입
대학혁신지원사업 4,254,400,000원, 국가교육근로장학 1,203,732,236원,
대학일자리센터 270,000,000원, 시간강사처우개선 185,537,300원 등
 - c. 국가장학금 수입(유형1 86.3억, 유형2 10.9억)
- 5) 교육비 환원율에 대하여 설명함(2021년 170.92%)
- 6) 자금계산서 수입, 지출 현황 및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설명함.

위 원 1 : 교육비환원율 증가이유에 대해 질의함

재 무 팀 장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등록금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어 등록금환원율이 5%이상 감소하였으나 2021년 비등록금 사업의 정상화 노력을 통해 2019년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음을 설명함.

위 원 4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총괄표상 전입 및 기부수입 금액과 비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총괄표의 전입 및 기부수입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재 무 팀 장 :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총괄표에 나타내므로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설명함.

위 원 5 : 학부 입학금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예 산 팀 장 : 입학금 폐지는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및 학생대표에 의해 2018년 합의된 사항으로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2023학년도 완전히 폐지되는 것임을 설명함.

위 원 6 : 단기차입금 상환액이 9억원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우리대학의 차입금 현황에 대해 질의함.

재무팀장 : 2017년에 기숙사(살렘관) 건축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63억원을 차입하였으며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현재 1,125,000천원을 상환하였으며 5,175,000천원이 차입금 잔액으로 5년 9개월의 상환기간이 남아있음을 설명함.

위원장 :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결산서가 작성되고 외부회계감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은바 제안된 2021학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할 것을 제안함.

위원 2 : 재청함.

모든 위원들 : 전체위원 거수함.

4. 차기이월금 결의

위원장 : 2021학년도 이월금은 2022학년도에 교원총원 또는 장학금 등 직접교육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위원 1 : 학교측이 제안한 직접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모든 위원들 : 위원 2가 재청하고 전체위원 모두 거수하여 결의함.

5. 최종 결의

위원장 : 더 이상 궁금하거나 의논 사항이 없으면 2021학년도 결산서 및 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의결할 것을 요청함.

예산팀장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것과 2021학년도 결산서 심의 및 승인 그리고 2021학년도 차기이월금은 2022학년도에 직접교육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동의함.

위원 4 : 재청함.

위원장 : 가하다고 생각하는 위원께서는 거수로서 표해줄 것을 요청함.

모든 위원들이 거수함.

위원장 :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선언함.

6. 회의 종료

위원장 : 2022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목상기도로 종료함.

<별첨>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신·구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 「학칙」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개정: 2020.12.21.></p> | <p>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 (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금 심의에 관한 사항 2. 등록금 인상률 심의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p>제2조 (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등록금 인상률 심의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
| <p>제3조 (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재단법인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장이 2인, 원우회장이 1인을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p>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p>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 <p>제3조 (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단법인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근무경력 포함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대학원 원우회장으로 한다. 단, 임기 종료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학생대표가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p>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p>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
| <p>제4조 (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8</p> | <p>제4조 (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는 9명으로 하며,</p> |

| | |
|---|---|
| <p>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5.21.,2019.06.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대표는 2인은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은 예산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12.5.21.>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p>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9.06.10.>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p>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외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대표는 기획처장과 학생처장 2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예산팀장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명으로 하고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및 대학원 원우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외부전문가대표는 1명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명으로 한다.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1명으로 하고 교직원으로 분류한다. <p>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p>제4조의2 (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p>[본조신설: 2020.12.21.]</p> | <p>제4조의2 (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p>[본조신설: 2020.12.21.]</p> |
| <p>제5조 (임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2 (사전공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20.09.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p> <p>(신설)</p> | <p>제5조 (임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의2 (회의 소집)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및 홈페이지에 |

| | |
|---|---|
| | <p>공고한다.</p> <p>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p> |
| <p>제6조 (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p> <p>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p> <p>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p> <p>제6조의2 (회의록 및 사후공고)</p> <p>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1.></p> <p>②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21.></p> <p>[제6조에서 이동 2020.12.21.]</p> <p>제6조의3(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p> <p>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본조신설 2020.12.21.]</p> | <p>제6조 (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p> <p>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p> <p>위원장은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p> <p>제6조의2 (회의록 및 사후공고)</p> <p>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1.></p> <p>②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21.></p> <p>[제6조에서 이동 2020.12.21.]</p> <p>제6조의3(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p> <p>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20.12.21.]</p> |
| <p>제7조 (사임) 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p> | <p>제7조 (사임) 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제4조에 의거 후임자의 선임을 위원회에 요청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5.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6.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5.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6.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7.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확인서

본인은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에 동의합니다.


안건 1.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그 외 10분의 5 미만, 교수대표 기획처장, 학생처장, 직원대표 예산팀장, 재단추천 1명, 학생대표 총학생회장, 부회장, 원우회장, 외부전문가 1명, 동문대표 1명으로 전체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10분의 4 이상 위원 요청으로도 회의소집 가능하며 각 위원에게 안건, 회의자료, 장소 등을 개별통지한다. ----- 원안 의결

안건 2.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심의 ----- 원안 의결

안건 3. 2021학년도 이월금은 2022학년도 직접교육비로 사용 ----- 원안 의결

2022년 4월 15일

소 속 : 기획처장(위원장)

성 명 : 이 병 희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확인서

본인은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에 동의합니다.

안건 1.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그 외 10분의 5 미만, 교수대
표 기획처장, 학생처장, 직원대표 예산팀장, 재단추천 1명, 학생대표 총학생
회장, 부회장, 원우회장, 외부전문가 1명, 동문대표 1명으로 전체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10분의 4 이상 위
원 요청으로도 회의소집 가능하며 각 위원에게 안건, 회의자료, 장소 등을
개별통지한다. ----- 원안 의결

안건 2.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심의 ----- 원안 의결

안건 3. 2021학년도 이월금은 2022학년도 직접교육비로 사용 ----- 원안 의결

2022년 4월 15일

소 속 : 학생처장(부위원장)

성 명 : 유 수 현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확인서

본인은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에 동의합니다.

안건 1.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그 외 10분의 5 미만, 교수대
표 기획처장, 학생처장, 직원대표 예산팀장, 제단추천 1명, 학생대표 총학생
회장, 부회장, 원우회장, 외부전문가 1명, 동문대표 1명으로 전체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10분의 4 이상 위
원 요청으로도 회의소집 가능하며 각 위원에게 안건, 회의자료, 장소 등을
개별통지한다. ----- 원안 의결

안건 2.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심의 ----- 원안 의결

안건 3. 2021학년도 이월금은 2022학년도 직접교육비로 사용 ----- 원안 의결

2022년 4월 15일

소 속 : 외부전문가(변호사)

성 명 : 이영 21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확인서

본인은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에 동의합니다.

안건 1.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그 외 10분의 5 미만, 교수대표 기획처장, 학생처장, 직원대표 예산팀장, 재단추천 1명, 학생대표 총학생회장, 부회장, 원우회장, 외부전문가 1명, 동문대표 1명으로 전체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10분의 4 이상 위원 요청으로도 회의소집 가능하며 각 위원에게 안건, 회의자료, 장소 등을 개별통지한다. ----- 원안 의결

안건 2.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심의 ----- 원안 의결

안건 3. 2021학년도 이월금은 2022학년도 직접교육비로 사용 ----- 원안 의결

2022년 4월 15일

소 속 : 예산팀장

성 명 : 이주승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확인서

본인은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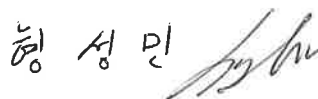
안건 1.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그 외 10분의 5 미만, 교수대표 기획처장, 학생처장, 직원대표 예산팀장, 재단추천 1명, 학생대표 총학생회장, 부회장, 원우회장, 외부전문가 1명, 동문대표 1명으로 전체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10분의 4 이상 위원 요청으로도 회의소집 가능하며 각 위원에게 안건, 회의자료, 장소 등을 개별통지한다. ----- 원안 의결

안건 2.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심의 ----- 원안 의결

안건 3. 2021학년도 이월금은 2022학년도 직접교육비로 사용 ----- 원안 의결

2022년 4월 15일

소 속 : 대학원 원우회장

성 명 :  홍 성 민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확인서

본인은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에 동의합니다.


안건 1.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그 외 10분의 5 미만, 교수대
표 기획처장, 학생처장, 직원대표 예산팀장, 재단추천 1명, 학생대표 총학생
회장, 부회장, 원우회장, 외부전문가 1명, 동문대표 1명으로 전체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10분의 4 이상 위
원 요청으로도 회의소집 가능하며 각 위원에게 안건, 회의자료, 장소 등을
개별통지한다. ----- 원안 의결

안건 2.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심의 ----- 원안 의결

안건 3. 2021학년도 이월금은 2022학년도 직접교육비로 사용 ----- 원안 의결

2022년 4월 15일

소 속 : 총학생회 회장

성 명 : 남수건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확인서

본인은 2022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에 동의합니다.

안건 1.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그 외 10분의 5 미만, 교수대표 기획처장, 학생처장, 직원대표 예산팀장, 재단추천 1명, 학생대표 총학생회장, 부회장, 원우회장, 외부전문가 1명, 동문대표 1명으로 전체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10분의 4 이상 위원 요청으로도 회의소집 가능하며 각 위원에게 안건, 회의자료, 장소 등을 개별통지한다. ----- 원안 의결

안건 2.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심의 ----- 원안 의결

안건 3. 2021학년도 이월금은 2022학년도 직접교육비로 사용 ----- 원안 의결

2022년 4월 15일

소 속 : 총학생회 부회장

성 명 : 김예동 